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도입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40호, 2026. 3. 10. 공포, 2026. 6. 11. 시행,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조형물”)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조형물 등의 실태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1) 조형물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주체
- 2) 조형물등의 보존 상태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조형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실태조사) 제1항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
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의 실태조사는 3년마
다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형물등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조형물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주체
2. 조형물등의 보존 상태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형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을 면접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및 주거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실태조사) ① -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의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형물등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형물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주체 2. 조형물등의 보존 상태 및 관리

<신 설>

주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형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
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6381